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1. 4. 8.
- 회부일자: 2021. 4. 9.
- 검토기간: 2021. 4. 9. ~ 2021. 4. 19.

2. 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달서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보완 요청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의 권리(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추가(안 제2조)
- 나.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 및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해 명시(안 제5조)
- 다. 아동영향평가실시 의무, 근거, 실시정책과 대상을 구체화(안 제10조)
- 라. 아동권리대변인의 구성과 역할 책무에 대해 구체적 명시(안 제11조)
-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 조항 삽입(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5. 검토의견

- 지난 2018년 12월, 달서구는 ‘아동친화 도시’ 조성 사무를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추진하고자 구성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가입하면서, 당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하 **규약**)」을 준수키로 한 바 있음.
- 그동안 동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와 이에 맞춰 동 규약의 개정(2019. 9. 24.)이 있었으며, 달서구는 개정된 규약들 역시 수용하여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여왔음
- 최근 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 보완 요청이 있었으며 집행부는 이를 수용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바,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정책 방향)가 반영된 것인 바,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 ① ~ ② 생략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11.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략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생략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